

의안번호	2212309
의 퇴 인	김영진 의원
회 답 일	2025.11.7.
추계번호	25E4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 추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안 제129조제5항(원천징수세율)	○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 소득에 퇴직소득금액 및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이자·연금·기타·퇴직소득 추가 - 특례 적용 대상 소득에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시행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안 제129조제5항(원천징수세율)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소득에 퇴직소득금액 및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이자·연금·기타·퇴직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은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 IRP 등) 납입금을 해외 주식형 펀드, 국

내상장 해외투자 ETF 등에 투자하여 환매수익, 배당수익 등을 얻은 경우 추후 해당 계좌에서 소득금액을 인출(연금수령 등)할 때 과세되는 산출세액(연금·퇴직소득세)에서 해당 펀드, ETF 등의 운용사가 외국에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연금계좌 내 해외 투자상품 수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외국납부세액 차감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액이 감소하게 됨

- 가령, ISA의 경우 해외 주식형 펀드, 국내상장 해외투자 ETF 등에서 배당금이 발생할 경우 현지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ISA에 지급되고, 추후 ISA 만기에 따라 세액을 정산할 때 기 납부한 현지 배당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감하고 있음
- 연금계좌의 경우도 국내상장 해외투자 ETF 등에서 배당금이 발생할 경우 현지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나, 추후 이를 포함한 연금계좌 납입액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ISA와 달리 기 납부한 현지 배당소득세가 차감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계를 위해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지급된 연금계좌로 지급된 외국 간접투자 소득금액(배당, 환매수익, 리츠 분배금, 채권이자 등), 간접투자회사등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또는 해당 국가의 세율 등에 대한 자료·정보 등이 필요하나 해당 자료·정보의 습득이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